

최종 청문회 결정 재심 요청

DS 1824(개정2023년 4월)

최종 청문회 결정 재심 요청

청문회가 끝난 후, 귀하 또는 리저널센터는 "재심"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재심은 청문회 결정 기재 문서의 표기 오류를 수정하거나 사실 또는 법률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. 여기에는 거부된 청문회 담당자 자격 박탈 요청의 재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재심이 다를 수 있는 유일한 요소입니다.

귀하는 청문회 결정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해야 합니다.

최종 청문회 결정의 사본에 서명하거나 해당 사본을 받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이 요청 양식의 사본을 전송해야 합니다. 상대방은 재심 신청서를 뒷받침하거나 그에 상충되는 서면 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 재심은 요구되지 않습니다.

재심 정보

DDS 시스템 추적 번호:

OAH 케이스 번호:

최종 결정 당사자 이름(청구인):

리저널센터:

최종 청문회 결정일:

재심 요청 근거 정보

재심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근거 명시(해당되는 모든 확인란에 표시하시오)
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실 관계나 법의 오류 정정	1. 몇 페이지의 몇 번째 줄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정정이 필요합니까?
<input type="checkbox"/> 결정의 표기 오류	1. 몇 페이지의 몇 번째 줄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정정이 필요합니까?
<input type="checkbox"/> 청문회 담당자가 본인의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위한 결정	1. 청문회 전 청문회 담당자의 배제를 요청했습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 2. '예'를 선택한 경우 청문회 담당자의 공정함을 보장할 수 없던 사유는 무엇입니까?

신청자 서명:

날짜:

청구인, 미성년 자녀의 부모, 위임 대리인, 보호자, 후견인 또는 변호사

리저널센터

반드시 위의 공간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하십시오. 이는 수기 또는 전자 방식의 서명입니다. 이름을 입력하면 이 양식에 전자 서명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